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 **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** 전문공보담당관 형사1부장 백수진 전화 063-472-4328 / 팩스 063-472-4508	**보 도 자 료** 2020. 3. 9.(월)

제 목	**군산 그랜드파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폭행 등 사건 구속 기소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▣ **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**(지청장 박억수)은 군산 지역 폭력조직 「그랜드파」 조직원들의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목적 집단 감금·폭행사건과 위 사건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보복목적 감금·상해 사건을 수사한 결과 그랜드파 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하고, 추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
▣ 피고인들은 군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'그랜드파' 소속 폭력조직원들로,

- 조직 탈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조직원들을 불러모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,
-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제보자를 보복 목적으로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,
- 조직의 유지·존속을 목적으로 탈퇴 조직원에 대한 감금·폭행을 자행하고, 신고자에 대한 보복목적 상해를 가한 폭력조직원들을 일제 검거하고 구속기소한 사례임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 (총 12명)

- A (24세, 그랜드파 행동대원)
- B (21세, 그랜드파 행동대원)
- C (21세, 그랜드파 행동대원)
- D (21세, 그랜드파 행동대원)
- E (20세, 그랜드파 행동대원)
- F (21세, 그랜드파 행동대원)
- G (20세, 그랜드파 행동대원)
- H (19세, 그랜드파 행동대원)
- I (22세, 그랜드파 행동대원)
- J (20세, 추종세력)
- K (22세, 추종세력)
- L (여, 18세, 단순 가담자)

- 공소사실 요지

- A 등 9명은 '20. 2. 10.경 '그랜드파' 조직원인 피해자들이 조직을 탈퇴한다는 이유로 차량에 강제로 태워 야산 등지로 이동 후 알루미늄 방망이로 때려 상해

☞ 폭처법위반(단체등의공동감금 · 공동상해), 특수상해

- I 등 2명은 '20. 2. 11.경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직원들이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제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군산 일대를 다니며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

☞ 특가법위반(보복감금 · 보복상해 · 면담강요)

2 수사 경과

- ’20. 2. 10.~2. 12. 군산경찰서, 탈퇴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감금 및 폭행을 가한 D 등 10명 체포
- ’20. 2. 13. A 등 폭처법위반(단체등의공동상해) 피의자 8명 구속
- ’20. 2. 13. 군산경찰서, 본 건 제보자를 보복 목적으로 감금 및 폭행한 I 등 2명 긴급체포
- ’20. 2. 15. I 구속
- ‘20. 2. 18.~2. 21. 군산지청으로 구속 송치
- ’20. 3. 5. 군산지청, A 등 ‘그랜드파’ 폭력조직원 9명 구속기소, 가담자 3명 불구속 기소

3 수사 의의

○ 최근 군산 · 익산 지역에서는 폭력조직이 세력 확장을 위하여 학창시절 또는 지역사회의 친분을 이용하여 **청소년들이나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수년간 속칭 ‘관리’를 하는 방식으로 영입 활동을 시도하는 경향**이 두드러짐

○ 검 · 경은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공조를 통해 **관련자 전원을 입건하고 그 중 폭력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하였는 바**, 향후에도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조직 영입활동을 원천차단하고 폭력 범죄 발생시 적극 대응함으로써 관내 폭력조직을 엄단하겠음. 끝.